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24. 5. 13.(월) 14:00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왕직(위원장), 구미래, 남해경, 이은하, 천진기, 최원석, 최종희, 홍석주)(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장터 개선사업	(공개)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사업	(공개)
3	나주 우남고택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	(공개)
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마을정자 철거 및 신축	(공개)
5	고성 왕곡마을 내 세천 재해복구 사업(재심의)	(공개)
6	아산 외암마을 내 담장 설치	(공개)
7	영천 연정고택 내 농로 확장	(공개)
8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마을 담장 정비	(공개)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보고사항】

10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주변 지반조사 보고	(공개)
11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공개)

1.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장터 개선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장터 개선 사업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의 사 항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내 하회장터 개선사업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76
- (4) 신청내용 : 하회장터 개선사업
 - 포장공사
 - 황토콘크리트 재포장($A=5,700m^2$, $T=150mm$)
 - 화강석 경계석 신재설치($L=60m$)
 - 우수받이($510 \times 410 \times 940mm$) 2개소
 - $\varnothing 150PVC$ 파이프설치($L=60m$)
 - 화단 조성공사
 - 기존 연지 내부 자연석 및 쇄석 자갈 채움(성토 $A=55.0m^2$)
 - 성토(평균 $T=600mm$) 후 잔디식재($A=120m^2$)
 - 배롱나무 2주($H=3.5m$, $R=20cm$), 왕벚나무 8주($H=4.0m$, $R=10cm$), 초화류(철쭉) 60주 식재,
 - 화강석 경계석 신재설치($L=60m$), 석재 평의자($1,500 \times 400$) 5개소
 - 코르크칩 포장($A=270m^2$, $T=15mm$)

- 화장실 리모델링 :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남·녀 공중화장실
- 담장공사 : 한식토석담장 설치(115m)
- 철거공사 : 하회장터 일주문 철거, 물레방아 방앗간채 철거
- 기타공사 : 종합안내판(2개), 표지석(1개) 설치, 잡목제거, 수목전정 41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안건번호 민속 2024-05-02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 사업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주변 자전거길 정비사업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245~320m)에 해당함
 - ※ 제1차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4.1.9.) : 부결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및 병산리 일원
- (4) 신청내용 : 자전거길 정비사업
 - 사업량 : 2,793.0m(자전거 및 보행로 정비)
 - 토공 : 흙깎기(2,400m³), 흙쌓기(1,890m³), 터파기(350m³), 되메우기(250m³)
 - 배수공 : 배수관(D200, L=27m), 플룸관(500C~600C, L=390m), V형측구 L=9m
 - 구조물공 : 전석쌓기(H=1.1m, L=213m), 식생옹벽블록(H=0.66m, L=122m)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A=11,514m², B=1~4m, L=2,793m), 도막형포장(A=3,416m²,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A=1,374m², B=5~11m, L=240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드레일과 울타리의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후 시행

3. 나주 우남고택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

가. 제안사항

전남 나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나주 우남고택」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나주 우남고택」 주변 저온저장고 설치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1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나주 우남고택」
 -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내촌길 3-8 (풍산리)
- (3) 신청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207-2
- (4) 신청내용 : 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규모 : 400×250×257cm
 - 외부마감재 : 우레탄 판넬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림벽이나 차폐조경 설치 후 시행

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마을정자 철거 및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함양 일두고택」 주변 마을정자 철거 및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함양 일두고택」 주변 마을 정자철거 및 신축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3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함양 일두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59-5
- (4) 신청내용 : 마을정자 철거 및 신축

구분	철거 정자	신축 정자	비고
부지면적	120.0㎡	120.0㎡	
건축면적	6.0㎡	11.46㎡	
연 면 적	6.0㎡	11.46㎡	5.46㎡ ↑
최고높이	3.057m	6.132m	3.075m ↑
건축구조	목구조(지붕금속기와)	목구조(지붕한식기와)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모와 형태를 조정 후 시행

5. 고성 왕곡마을 내 세천 재해복구 사업(재심의)

가. 제안사항

강원 고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성 왕곡마을」 내 세천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성 왕곡마을」 내 세천 재해복구 사업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성 왕곡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 ※ '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4.2.6.) : 부결
 -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성 왕곡마을」
 - 소 재 지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일원
- (3) 신청위치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38-4 일원
- (4) 신청내용 : 마을세천 재해복구

최초 신청('24.2.)	금회
·바닥보호공(전석갈기) : L=197m, A=834m ²	·바닥보호공 : L=100m, A=423.15m ²
·토공(사토) : V=117m ³	·호안기초보강 : L=64.2m, A=139.64m ²
·무근콘크리트타설 : V=83.36m ³	·토공(사토) : V=127.4m ³
	·무근콘크리트타설 : V=85.98m ³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바닥 박석 설치 시 크고 작은 석재가 자연스럽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정 후 문화재청 검토를 받아 시행

6. 아산 외암마을 내 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내 담장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내 농로 포장 및 석축 정비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지정구역 내에 위치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아산 외암마을」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86-1 외 2필지
- (4) 신청내용 : 담장 설치
 - 대지경계 담장 설치(W=0.7~1m, H=1.5m, L≒60m)
 - 담장 이설 약 25m
 - 사립문 1개소 이설

라. 의결사항

- 부결
 - 외암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없었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유산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음

7. 영천 연정고택 내 농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경북 영천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천 연정고택」 내 농로 확·포장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천 연정고택」 내 농로 확·포장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천 연정고택」 지정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천 연정고택」
 -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49-10
- (3) 신청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30 외 3필지
- (4) 신청내용 : 농로 확·포장
 - 농로 확장 : B=0.8~2.2m, L=60m
 - 농로 포장 : B=3.0~5.1m, 콘크리트 포장(T=20cm)
 - 사면정비(자연석쌓기) : H=0.5~2.0m, L=20m
 - 절토(18m³) 및 성토(11m³)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유산 경관 훼손 우려

8.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담장 정비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담장 정비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담장 정비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이격거리 60~22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 소 재 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12
- (3) 신청위치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1리 일원
- (4) 신청내용 : 마을 담장 정비(4개소)
 - 담장 신설(4개소) : W=0.6m, H=1.35~1.55m, L=93.4m
 - 기존 담장 철거(2개소)
 - P.C판 담장 철거 : W=0.12m, H=1.29m, L=17.4m
 - 토석담장 철거 : W=0.5m, H=1.2m, L=18.0m

라. 의결사항

- 부결
 - 마을 전체 담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등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보존정책과 주관 연구용역 실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 2021년 용역(인천, 경기, 부산 200건)
 - 2022년 용역(서울, 대전, 울산,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제주 378건)
 - 2023년 용역(경북 461건)
 - 2024년 용역(충북, 충남, 전북 393건)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등 5개소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9 (파장동)
2	국가민속문화유산	여주 보통리 고택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보통리)
3	국가민속문화유산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도 이천시 읍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4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56(궁평리)
		화성 정수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 (2) 변경내용: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현행화 및 용어 표준화, 규제지역 축소**

- 문화재청 훈령 제652호(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 시·도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따라 **규제완화 지역 도면 반영**

※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분	국가지정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관라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관라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	100	100	50	50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200	500	200	500
대전세종경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200	500	200	300
제주	500	500	300	300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참고자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 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구 분	적용 대상 구역	비고
1구역	개별검토 구역	
	-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구역	
2구역	고도제한 구역	
	-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로 구분, 고도 제한을 두는 구역 ※ 하나의 문화재에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의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이 총 4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기준을 두는 지역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으로 구분	
3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	
4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 구역	
	- 다른 문화재(지방문화재 등)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복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	

<허용기준 작성 예시>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타 문화재 허용기준 적용 구역이 모두 있는 경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2-1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3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2-4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 ○ ○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기념물 ○ ○ ○ ○ 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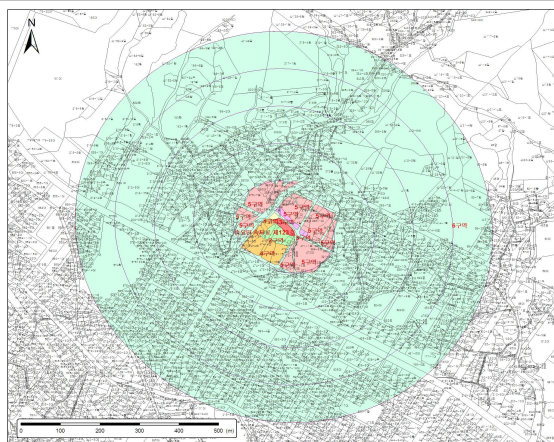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문화재유형	적용범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용범위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고도제한구역
최고높이 기준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경사지붕 기준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전체 유형	
용도범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식생과 관계있는 문화재 (동굴, 번식지, 서식지 등)	
굴착규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절·성토 범위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풍수적 관계 및 지형과의 관계 등을 중시하여 원지형 유지가 필요한 문화재	
건축규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거리(예시. 200m까지)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타법령에 따른 구역
도시계획 변경시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따른 구역

<별첨: 세부내용>

1.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첩의 관계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수원광주이씨필곡역
경기도 수원시 광안구 표장동 363 외
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면적지역 100 ~ 500(m) [허용기준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축척 1:4,500

〈조정 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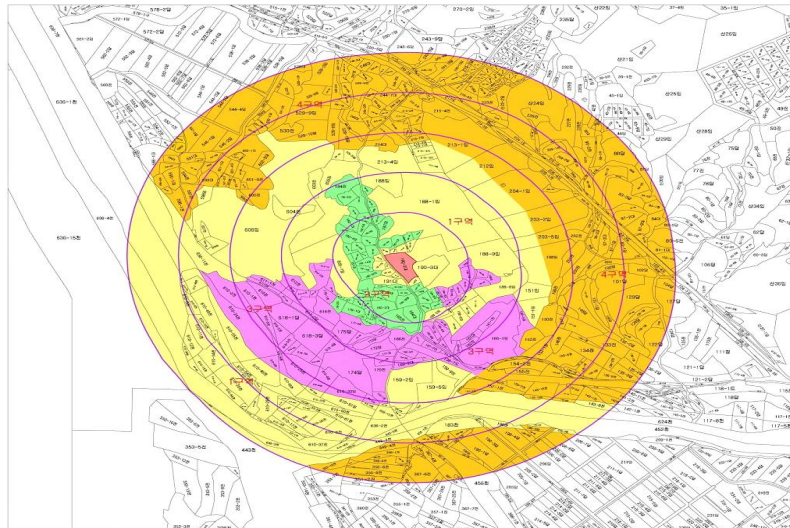


본 도면은 설계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첩의 관계이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2. 국가민속문화유산 「여주 보통리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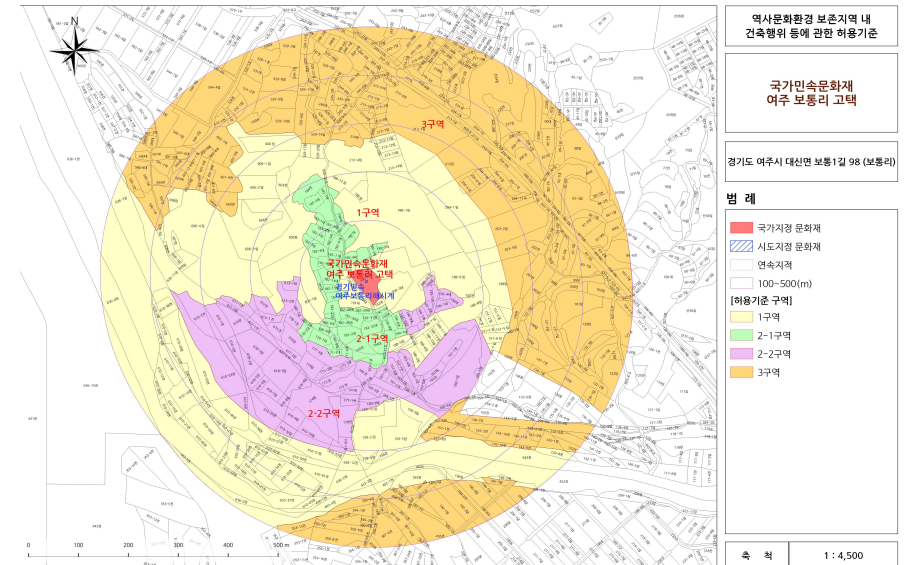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유산 「여주 보통리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전환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임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조정 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여주 보통리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전환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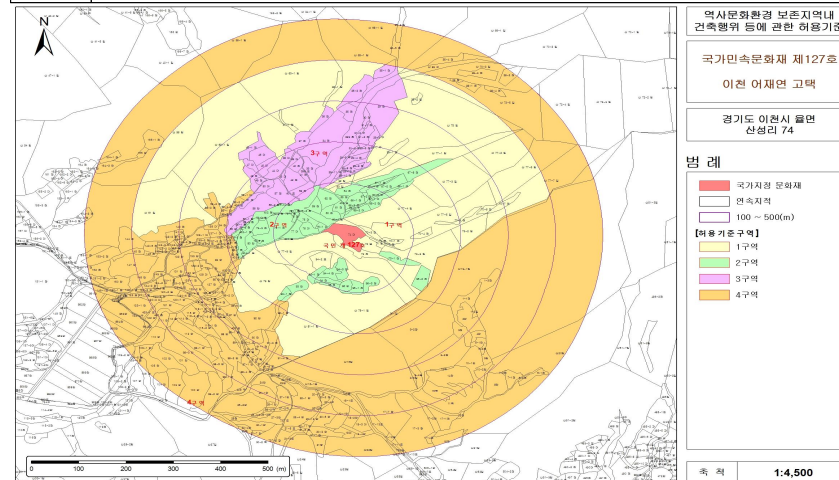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

3. 국가민속문화유산 「이천 어재연 고택」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유산 「이천 어재연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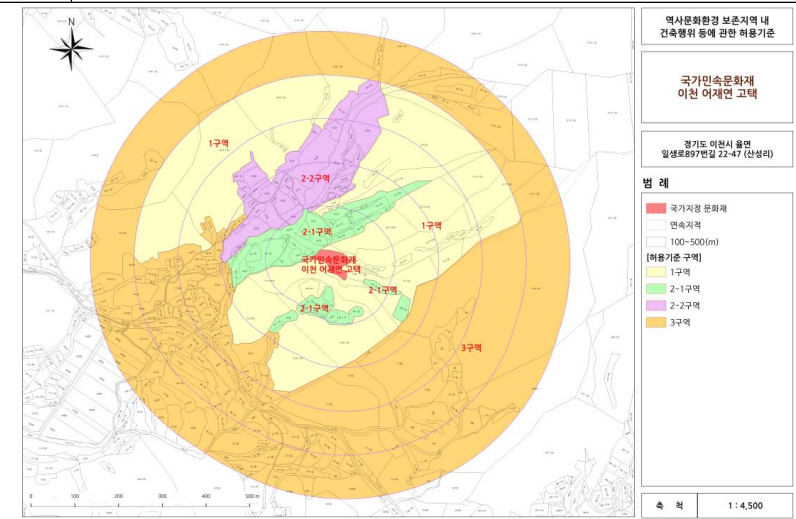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조정 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이천 어재연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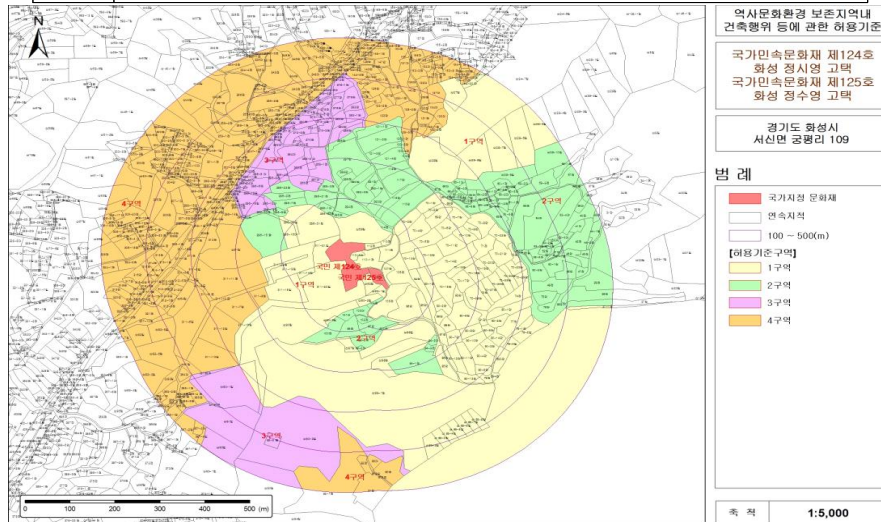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m 이하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이천시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4.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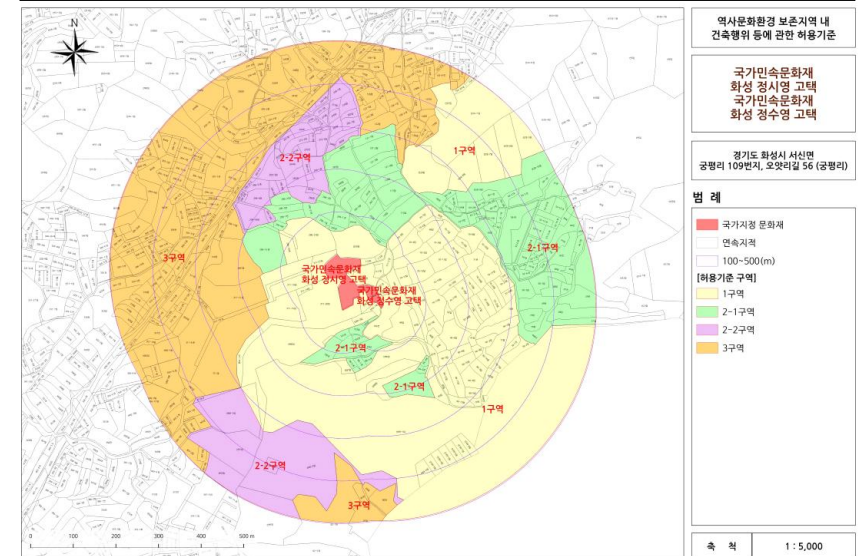
<조정 전>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공통 사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조정 후>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공통 사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10.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주변 지반조사 보고

가. 보고사항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기술 연구> 학술용역 관련, 익산 김병순 고택 주변 지반조사 계획을 보고합니다.

보 고 사 항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고도지역(익산) 문화유산 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대응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익산 김병순 고택 주변에 대하여 지진으로부터의 지반 안정성에 대한 연구자료 확보 추진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 상 : 익산 김병순 고택 주변 지반조사
 - 조사위치 : 전북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407
 - 지반조사 방법

지역	분류	문 화 유 산	조 사 방 법				문 화 유 산 과 이 격 거 리
			시추 조사	하향식 탄성파탐사	밀도 검층	물리탐사 (표면파탐사)	
익산	국가 민속	익산 김병순 고택	O	O	O	X	북쪽 약 10m (담장 밖)

- (3) 조사기간 : 2024. 5월 ~ 7월(3개월)
- (4) 추진방법 : 국립문화재연구원·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희송지오테크 공동 추진
- (5) 추진내용
 - 시추조사(1개소 대상 1공 수행) : 무수보링 적용, 최대 30m 또는 기반암 2m 확인, 표준관입시험 및 실내토질시험 병행

라.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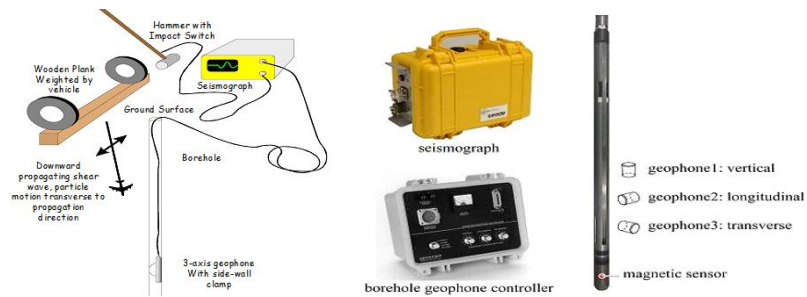
- 원안접수

구분	무수보링 시추장비	투입장비
모델명	SP4500	
크기	1.8m x 4.8m x 2.2m	
무게	4.5ton	
마력	100HP	
회전수	1,800rpm	
토크	400kg.M	
굴진구경	200mm이상 굴진 가능	
굴진능력	NX구경 300m 이상 굴진 가능	

무수보링 모식도



하향식 탄성파탐사 장비



11.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계		4건	허가 2건 조건부허가 2건									
제주 성읍마을	서귀포시 표선면 (○○○)	□ 제주 성읍마을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 신청위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55 내 주차장(성읍1리사무소) ○ 이격거리: 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1기) - 기초패드: 1.9m×0.8m×0.2m - 충전기: 1.19m×0.45m×1.69m(최고높이 1.89m) - 분전함 포함 - 터파기(지중화): 10.4㎡	○ 허가 -완속충전기 2기를 철거한 자리에 급속충전기 1기를 재설치 하는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									
영덕 괴시마을	경북 영덕군 (○○○)	□ 영덕 괴시마을 내 단독주택 리모델링 허가사항 변경 ○ 신청위치: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360 ○ 이격거리: 문화재 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 허가사항 변경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허가사항</th><th>변경 신청</th></tr></thead><tbody><tr><td>건축면적/연면적</td><td>· 99.1㎡ → 92㎡ (전면 일부철거)</td><td>· 99.1㎡→ 99.1㎡ (기준면적 유지)</td></tr><tr><td>기타</td><td>· 내부 구조 변경 · 단열재 및 창호 시공</td><td>· 철거 계획 취소에 따라 상세 변동</td></tr></tbody></table> ※ '24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24.2.6.) : 조건부 가결 - 최종 제출된 설계도면 대로 실시	구 분	허가사항	변경 신청	건축면적/연면적	· 99.1㎡ → 92㎡ (전면 일부철거)	· 99.1㎡→ 99.1㎡ (기준면적 유지)	기타	· 내부 구조 변경 · 단열재 및 창호 시공	· 철거 계획 취소에 따라 상세 변동	○ 허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허가 사항인 벽체 일부 철거를 철회하고 기준면적을 유지하고자 변경 신청한 건으로, 문화유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됨
구 분	허가사항	변경 신청										
건축면적/연면적	· 99.1㎡ → 92㎡ (전면 일부철거)	· 99.1㎡→ 99.1㎡ (기준면적 유지)										
기타	· 내부 구조 변경 · 단열재 및 창호 시공	· 철거 계획 취소에 따라 상세 변동										
여수 연등동 벚수	전남 여수시 (○○○)	□ 여수 연등동 벚수 주변 도시가스 배관 매설 ○ 신청위치: 전남 여수시 연등동 392-13도 일원 ○ 이격거리: 보호구역 내(1~3구역 포함) ○ 허가내용: 도시가스 배관 매설 - 배관 총길이 : 1,820m - 매설규모 : 매설깊이(0.6~1.2m), 굴착폭(1.0m)	○ 조건부허가 -도로를 굴착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굴착 시 진동은 최소화 하고 관계공무원 임의하에 실시									

정읍 김명관 고택	전북 정읍시 (○○○)	□ 정읍 김명관 고택 문화체험관 용도변경 ○ 신청위치: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815 ○ 이격거리: 보호구역 내 ○ 허가내용: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 - 당초 : 문화 및 집회시설(190.89㎡) -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127.08㎡), 제2종근린생 활시설(63.81~㎡)	○ 조건부허가 -본 건물은 정읍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내 고택문화체험관 일부를 전통음식체험관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간판, 조형물, 전기시설 등) 설치는 제외함
-----------	--------------------	--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